

##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(2010추73)의 현장검증 관련 보도자료

공보관(전화 : 3480-1451)

대법원 제1부(주심 대법관 박병대)는 원고 김제시, 김제시장, 부안군, 부안군수가 피고 안전행정부장관(피고보조참가인 : 군산시)을 상대로 위 피고가 2011. 11. 17.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제3호 방조제(다기능부지 포함) 및 제4호 방조제 구간(별지 도면 참조)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정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(2010추73, 대법원 단심사건)에 관하여,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 들여 2013. 4. 29. 새만금방조제 일원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함.

### I. 이 사건의 내용과 의미

#### ■ 이 사건의 내용

-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09. 12.경 피고에게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였고, 피고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1. 11. 17.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제3호 방조제(다기능부지 포함) 및 제4호 방조제 구간에 대해서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함
- 이에 원고들은 위 결정이 절차상으로 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였고,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신청을 초과하여 이루어졌으며, ③ 그 이유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, 실체적으로는 ① 새만금 매립지 전체가 일괄 결정되어야 하는데 일부 구간만 우선 결정하였고, ② 기존의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며, ③ 공정과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
- 대법원 제1부(주심 대법관 박병대)는 2012. 10. 25.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였

음

■ 이 사건의 의미

- 지방자치법은 2009. 4. 1.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면서, 제4조에서 매립지 등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하고,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
-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으로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이 해결되었음
- 이 사건은 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관하여 대법원에 제기된 첫 사건임

## II. 현장검증의 개요 및 의미

■ 현장검증의 일시 및 장소

- 검증 대법관 : 대법원 제1부 대법관(양창수, 박병대, 고영한, 김창석) 전원
- 검증 일시 : 2013. 4. 29.(월) 13:00(예정)
- 검증 장소 : 다기능부지(33센터), 농업용지 등
- 검증 방법 : 현장에서 이 사건 결정의 의미 및 내용 확인,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측면에서의 위 결정의 타당성 여부의 확인 등을 할 예정임.

■ 이 사건 현장검증의 의미

- 선거사건의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 이외에, 대법원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한 첫 사례가 될 것임

# ※ 새만금 방조제 도면

